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31
----------	-------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주철현 · 윤준병 · 어기구
이병진 · 송옥주 · 안호영
조인철 · 위성곤 · 천하람
송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제 혜택 등 국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법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통계조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

원으로 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20조의6 신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에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사업유형, 출자,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법인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2. 사용 목적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통계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통계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통계조사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4(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특례)</u> <u>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u><신 설></u>	<u>제20조의6(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사업유형, 출자,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u>

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
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
장에게 법인세 과세정보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1항
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
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2. 사용 목적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통계조사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해당 통계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통계조사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